

의안번호	2217856
의 퇴 인	정희용의원
회 답 일	2026.07.14.
추계번호	26C179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 (학생의 건강관리 와 급식 지원)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2 신설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 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

- 현행 「고등교육법」 제8조의2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쌀 소비기반을 강화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2017년 10개교(14만명)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 기준 245개교(540만명)을 대상으로 111억 2,600만원이 편성됨

1) 「고등교육법」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표 1]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원규모(개교)	26	28	144	190	208	245
지원인원(만명)	35	49	233	393	466	540
소요예산(백만원)	445	570	2,371	8,116	9,727	11,1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안이 시행되어 대학의 요청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기존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규모 및 지원 기간, 단가 등 정부의 지원 방법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